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의무 안내

1. 우리 부에서 구축한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10m이상 굴착공사가 포함된 사업에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10m이상 굴착공사 및 터널공사 등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반드시 활용하셔야 함을 알려드리며, 법률에 따른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고 추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 담당자(031-910-0407)